

# 시카고 근로 기준

귀하가 시카고 내에 있는 고용주를 위해 임의의 2주 동안 최소 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, 최저 임금 및 유급 병가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.



## 최저 임금

### 시카고 내 최저 임금 규정(MCC 1-24)

2020년 7월 1일 발효	대규모 고용주 직원 21명 이상	소규모 고용주 직원 4~20명	청소년 근로자	팁 근로자		
				대규모	소규모	청소년
최저 임금	\$14.00	\$13.50	\$10.00	\$8.40	\$8.10	\$6.00
추가 근무 최저 임금	\$21.00	\$20.25	\$15.00	\$15.40	\$14.85	\$11.00

**팁 근로자**는 레스토랑의 서버 등 임금의 일부로 팁을 받는 근로자입니다. 팁을 포함한 임금이 근무 시간에 대한 최저 임금에 준하지 않는 경우, **고용주는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.**

고용주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의 수와 관계없이, **모든 가정 내 근로자는 최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**(0~20명의 직원을 둔 고용주의 경우 \$13.50, 대규모 고용주의 경우 \$14.00)



## 유급 병가

### 의료 또는 안전 목적의 유급 병가(MCC 1-24)

근로자가 임의의 120일 기간 중 8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, **고용주는 근로자가 몸을 추스르거나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유급 병가(PSL)를 제공해야 합니다.**

병가 획득	병가 사용	이월
40시간을 근무할 때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 (12개월 중 최대 40시간)	직원 또는 가족이 병 또는 부상을 입었거나 가정 내 폭력 또는 성범죄의 피해자이거나 건강 관리, 치료, 진단, 예방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<b>12개월 중 최대 60시간</b>	유급 병가 중 절반은 <b>12개월 기간 내에 이월 가능</b> (최대 20시간) 특정한 경우, 최대 40시간 이월 가능

## 노동 착취

### 근로자들은 시카고 및 일리노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

여러분 본인이나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특정 노동을 하거나 특정 노동에 참여하도록 강요당하거나, 근무지를 떠날 수 없거나, 임금을 빼앗기거나, 여권이나 신분증을 압수 당하거나, 노동을 하지 않을 시 추방 당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,

**국가 노동 착취 핫라인(National Human Trafficking Hotline)에 1-888-373-7888번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로 "HELP" 라는 메시지를 233733번으로 보내 무료 지원 및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**

이는 비정부기관에서 운영하며, 160개의 언어로 상시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.



## 항의 제출

**311번으로 전화하거나 CHI 311 앱을 사용합니다. 또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항의 양식을 제출하세요.**

[www.chicago.gov/laborstandards](http://www.chicago.gov/laborstandards)



연제 대상 직원의 전체 목록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[www.chicago.gov/laborstandards](http://www.chicago.gov/laborstandards)에 방문하세요. 근로 기준 사무소(Office of Labor Standards)에 문의하려면 [bacplaborstandards@cityofchicago.org](mailto:bacplaborstandards@cityofchicago.org)에 방문하거나 312-744-2211번에 전화하십시오. 이 통지는 근무지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하며 보장 대상 피고용인의 첫 월급날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. 보복은 금지입니다. 2020년 7월 1일 통지 발효. 최종 업데이트: 2020년 7월 7일